

# 報道資料

(2000. 6. 14)

이 자료는 2000년 6월 16일(금)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## 主 题：金融持株會社 制度 改善方向 公聽會 資料

### 主 要 內 容

별 침 :

金融持株會社 制度 改善方向 公聽會 발표 내용 1부 끝.

일 시 : 2000년 6월 15일(목) 14:00~17:00

장 소 :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

韓 國 金 融 研 究 院

이 자료와 관련하여 질문 혹은 확인하실 일이 있으시면, 다음 전화  
번호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 (전화 : 3705-6274~5, 지동현 박사)

공청회자료

# 金融持株會社 制度 改善 方向

2000. 6. 15



## 一目 次—

I. 金融產業의 國內外 環境 變化 .....	1
II. 金融持株會社 活性化 必要性 .....	3
III. 金融持株會社 法制 整備 必要性 .....	5
IV. 金融持株會社法 制定 必要性 .....	6
V. 金融持株會社 法制 整備 主要 內容 .....	6
1. 基本 概念 .....	6
2.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認可制 導入 .....	7
3. 金融持株會社의 形態 및 設立節次 特例 .....	8
4. 金融持株會社의 所有 및 支配構造 .....	11
5.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監督 .....	13
6. 외국 금융지주회사 .....	16
7. 金融持株會社에 대한 세제 문제 .....	17

## I. 金融產業의 國內外 環境 變化

- 선진국 금융기관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大型化·兼業化를 추진함으로써 「규모·범위의 경제」 실현
  - 금융기관간 경쟁격화로 인수·합병이 활발히 진행
  - 금융자율화 추세에 따라 금융권역별 업무영역 구분이 약화되면서 겸업화 진전
    - \* 90년대 초까지 대형화 목적의 동종 금융기관간 합병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90년대 중반이후 겸업화를 겨냥하여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이종 금융기관간 통합이 주류
- 선진국 대형금융기관은 90년대 이후 세계시장 차원의 규모·범위의 경제실현을 위하여 新興市場으로의 進出을 가속화
  - \* 특히 금융위기를 겪은 아시아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을 적극 추진
  - 우리나라도 금융산업 개방과 부실금융기관 해외매각 등의 결과 외국인 지분참여가 확대되었음
  - 국내금융기관이 자체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외국계 대형금융기관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
- 정부주도에 의한 “생존·퇴출” 중심 산업개편 완료 및 예금자 보호의 원상회복 등으로
  -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自律的인 大型化·兼業化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

- IMF위기 이후 국내금융기관들은 부실채권의 정리, 자본확충 등 하드웨어 중심의 구조조정과 아울러 지배구조의 개선, 혁신관행의 혁신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
  - 그러나 대우 사태이후 채권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, 현대 사태가 표면화되면서 단기금융시장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가 확대
- 정부는 그동안 위기 극복 경험을 살려 최근에 발생한 위기 재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
  - 기업의 구조조정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
  - 투신사를 비롯한 비은행금융기관의 부실문제를 해결
  - 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조속히 달성
  - 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금융업의 겸업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여 국내금융기관의 대형화·겸업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제도를 개선

## II. 金融持株會社 活性化 必要性

- 금융의 「대형화와 겸업화」를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산업이 「21세기 새로운 戰略產業」으로 발전
  -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대형화와 겸업화를 적극 모색할 필요
-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기관의 大型化 추진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
  - 합병의 경우 규모의 경제 등 대형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인사·조직면에서의 통합에 어려움이 있어 합병추진에 애로
  - 지주회사의 경우 기업조직 융화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자회사의 전문성 유지 및 상호경쟁이 가능
-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기관의 兼業化 추진시에도 활용 가능
  - 자회사 방식의 경우 모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자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
    - 자회사의 부실이 금융업을 수행하고 있는 모회사로 직접 파급될 우려
  - 지주회사 방식은 자회사의 경영성과만을 기준으로 자원을 배분함으로써 특정 자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적으며
    - 지주회사가 완충역할을 하여 자회사의 부실이 다른 자회사로 직접 파급되는 것을 차단

- 우리나라에는 엄격한 분업주의를 고수해오다가 1993년에 자회사방식에 의한 겸업을 허용
  - 금융지주회사방식은 지주회사 산하에 금융기관을 병렬적으로 배치하여 개별 금융기관의 독립성이 자회사방식 보다 큼
  - 자회사방식에 의한 겸업화를 허용한 상태에서 금융지주회사방식을 금지할 이유가 없음
- 금융기관이 대형화 및 겸업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조직구조에 대한 선택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차원에서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개선할 필요
  -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그룹의 자금과 인력 등 자원을 집중하여 관리하고 배분함으로써 개별 기업의 이익극대화 보다는 금융그룹 전체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
  - 금융지주회사 형태의 조직구조를 통해 금융기관이 자본 확충 및 부실채권 정리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의 법 내용을 정비할 필요
    - 금융그룹의 자본확충경로로 지주회사는 물론 자회사가 활용될 수 있도록 상장규정상 특례조치를 통해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동시 상장을 허용
    - 기존 은행에서 분할되어 신설되는 은행자회사의 인가 역시 일정 요건을 만족시키는 한 허용

-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동기 자체가 대주주의 레버리지 증대 등 확대지향경영에 있을 가능성이 큰 비은행지주회사와 확대지향경영 동기가 상대적으로 약한 은행지주회사로 금융지주회사를 구분하여 확대지향을 억제하는 규제 수단을 차등 적용
- 또한 은행지주회사는 비은행지주회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강력한 건전성 감독을 필요로 하는 등의 이유로 은행지주회사와 비은행지주회사의 분리는 불가피

### III. 金融持株會社 法制 整備 必要性

- 상법, 은행법 등의 특례를 규정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
  - 완전지주회사(자회사 주식의 100%를 소유하는 지주회사)의 설립 절차 신설
  - 은행소유한도를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완화 등
-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를 포괄하는 차단벽 설치 등 건전성 감독체계를 마련
- 금융지주회사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자본 및 경영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레버리지 및 세제상의 설립 유인을 제공할 필요
  - 재무적인 융통성 및 세금 경감 등 금융지주회사 고유의 설립 유인이 제공되지 않으면 금융지주회사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곤란
  -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더라도 금융지주회사제도가 금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

## IV. 金融持株會社法 制定 必要性

### □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통일된 법률체계 수립

- 자주회사 및 자회사의 요건, 금감위의 감독 등 규제체제를 개별법마다 담는 경우 법령의 개정에 따르는 시간·노력의 낭비뿐만 아니라 복수 법령의 적용·해석상 혼란을 초래

### □ 여타 법률개정 요인을 최소화

- 금융지주회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은행법, 상법, 공정 거래법 등 관련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나 단일법 제정시 이를 수용할 수 있어 효율적

## V. 金融持株會社 法制 整備 主要 内容

### 1. 基本 概念

#### □ 금융지주회사의 정의

- 금융기관의 주식(지분)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

※ 주된 사업 : 금융지주회사 총 자산의 50% 이상을 자회사 주식으로 소유

#### □ 금융지주회사의 업무

-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영업전략 수립 등 경영관리와 그 부수업무만을 수행(순수지주회사)

##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

-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회사
  - ※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 50%(상장법인 30%)이상 소유
- 자회사 범위 : 금융기관,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비금융기관, 중간지주회사
  - ※ 자회사인 비금융기관 : 금융전산회사, 부동산등 자산관리회사, 금융조사연구기관 등
  - ※ 중간지주회사 :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지주회사
- 자회사에 의한 분류
  - 은행지주회사 :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금융지주회사
  - 비은행지주회사 :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

## 2.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認可制 導入

-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를 지배함으로써 금융시스템 안정성·예금자보호 등에 중대한 영향을 주므로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하여 인가제 도입
- 인가요건은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규정
  - 금융지주회사의 재무건전성,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·지주회사 경영능력,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
-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
  - 공정거래법상의 요건충족 및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에 대해 금감위 인가시 공정위와 사전협의

## 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(손자회사) 편입시 인가제 도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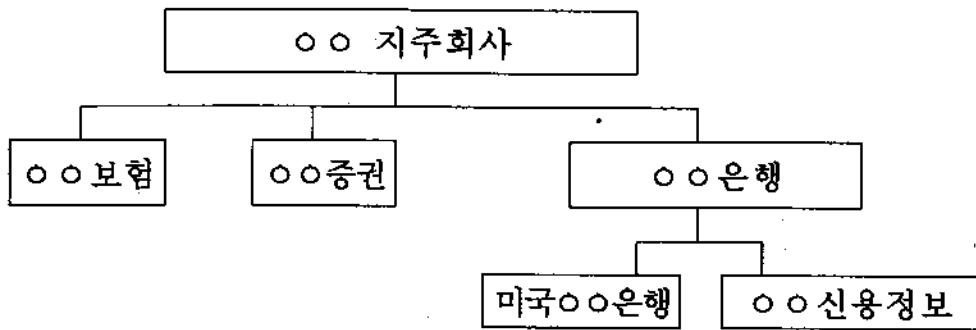
- 자회사의 편입은 금융지주회사 그룹 전체의 건전성 및 경영관리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므로 인가제 필요
  - 다만, 자회사의 성격에 따라 신고제를 적용
    - \* 신고대상 : 수신기능이 없거나 설립시 인가를 받지 않는 금융기관, 금융관련 일반회사 등
-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에 대해 사전 협의

## 3. 金融持株會社의 形態 및 設立節次 特例

### 가. 孫子會社, 中間持株會社의 例外的 許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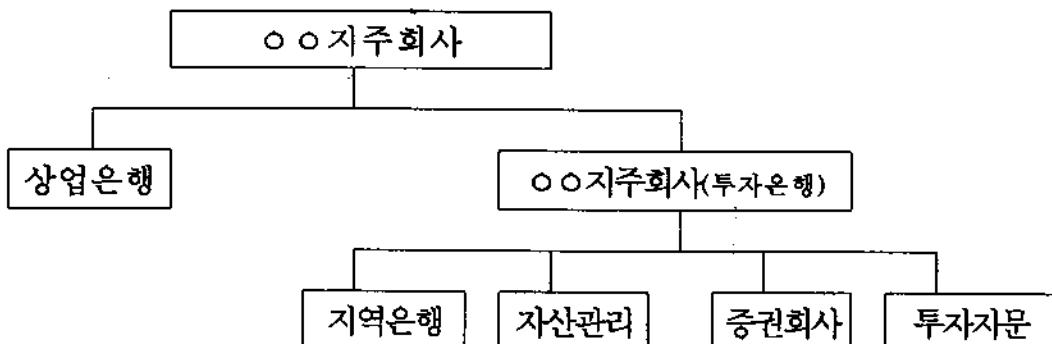
- 손자회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, 자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히 관련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자회사의 경영효율성 제고
- 대상 : 자회사의 업무와 밀접한 금융기관 및 금융관련 일반회사
- 다만, 금융기관을 손자회사로 하는 경우 금융지주 회사의 취지에 맞도록 일정한 제한
  - ※ 은행, 보험, 증권업역간 종속관계는 금지하고 동일업역내에서도 자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만 인가

<손자회사의 활용>



- 중간지주회사를 허용하여 지주회사내 소그룹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지주회사 구성 가능
  - 과도한 계열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는 중간지주회사의 지분 100%를 보유토록 의무화

<중간지주회사의 활용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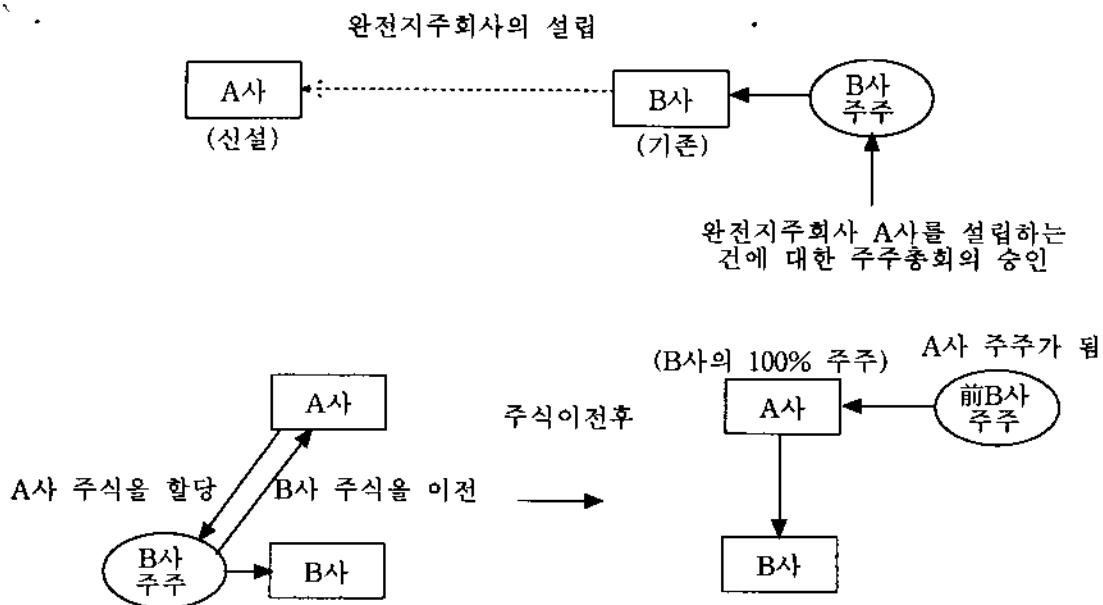


나. 完全子會社 설립을 용이하게 하는 特別節次 新設

-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100% 취득할 수 있도록 상법상 특례절차 필요
  - ※ 지주회사의 경우 그룹전체의 이익을 위해 특정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자회사 소액주주와의 利益相衝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회사 주

식을 100% 취득하는 것이 보편화

## □ 株式移轉 · 交換方式



- 「회사 전체 주식을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의 신주와 교환하는 것」을 주총에서 特別決議할 수 있도록 허용
- 반대주주에 대해서는 株式買受請求權을 부여함으로써 완전자회사 설립을 용이하게 함

#### 4. 金融持株會社의 所有 및 支配構造

-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여 금융  
지주회사의 취지를 살려나가도록 함
  - 비은행지주회사의 소유에는 기타 제한이 없으나, 은  
행지주회사에는 동일인 소유한도 적용
  - 은행지주회사가 은행주식을 소유함에 있어서 은행법상의  
동일인 소유한도 규정 배제
-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는 경영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고  
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
  - 은행지주회사와 일정 자산규모 이상인 비은행지주회사의  
경우 금융법령상 강화된 지배구조를 적용
    - \* 사외이사의 과반수 선임, 감사위원회의 설치, 소수주주권 강화 등
-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소유제한 신설 방안
  - (1안) 은행지주회사 소유제한을 은행법과 동일하게 적용
  - (2안) 금융전업가에 한하여 경영권 행사 가능한 범위까지  
소유 허용
    - (금융전업가가 은행경영을 위한 Fund를 공모형  
식으로 설정하는 경우 해당 Fund를 금융전업가  
로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)
  - (3안) 산업자본에도 소유는 허용하되, 소유금융기관과 산  
업자본간 일체의 금융거래를 금지

### <장단점 비교>

	장점	단점
1안	사금고화를 사전적으로 차단	금융자본의 육성에 애로
2안	금융자본의 육성	산업자본과의 형평성 문제
3안	은행지주회사의 자본확충 용이	산업자본에 의한 사금고화 가능성

□ 소유가 완화되는 경우 은행지주회사 대주주에 대한 여신 제한 혹은 여신금지를 신설

○ 적용대상 대주주의 범위

\* (1안) 주식소유에 자격요건이 적용되는 대주주의 범위 와 일치

\* (2안) 지분율 1% 초과 주주로 확대

○ 적용대상 금융기관의 범위

\* (1안) 대주주로 지배하는 당해 금융그룹

\* (2안)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여 우회 여신의 가능성 을 사전적으로 차단

○ 여신한도 규제 혹은 여신 금지

\* (1안:여신한도 제한) 금융그룹 연결자기자본의 25% 혹은 대주주의 금융지주회사 출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초과 금지

\* (2안:여신 금지) 대주주에 대한 여신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

은행지주회사 주식·소유 제한 완화에 따른 보완조치

- 은행지주회사가 대주주 계열사 확장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대주주 소속 계열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

## 5.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監督

### 가.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를 포괄하는 經營健全性 監督

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종합경영평가

- 지주회사와 자회사를 연결한 자본적정성, 자산상황 및 경영관리상황 등에 대한 평가·검사를 실시
- 평가결과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경영개선권고, 요구 및 명령(증자 및 자회사 주식의 처분 등) 가능

사업내용 및 재산상황에 대한 보고 및 공개

- 금융지주회사는 매 분기별 영업보고서를 금감위에 제출하며,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를 연결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의 결산일후 3개월내 공고
-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를 금감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

□ 금융그룹 차원의 건전성 감독

-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힘의 원천이 되어야 함을 관련법에 명시하여 자회사가 경영상 곤경에 처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지원해야 하는 의무 부과
-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아 들이는 배당금이 지나치게 커서 자회사의 건전성을 위협하지 않도록 배당금에 관한 규제도 필요
- 금융그룹의 특정 기업에 불리한 내부거래를 막기 위해서 시장가격에 의한 내부거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내부감사시스템의 작동을 의무화

나. 금융지주회사 資金調達 및 運用 制限

-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비율: 순자산의 100% 이내
- 금융지주회사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: 잉여자기자본(자기자본-자회사출자총액)이내
-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 : 발행주식의 5%이내로 제한  
(이 경우에도 지배목적의 주식소유는 금지)
  - \* 비금융회사의 주식소유는 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전업가가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만 허용(이 경우에도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(Shadow voting))

자회사에 대한 출자는 자기자본의 일정배율 이내로 제한  
(단, 자회사 재무개선을 위한 출자 등 구조조정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)

- (1안) 모든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자회사에 대한 출자를 자기자본의 100% 이내로 제한
- (2안) 모든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자회사에 대한 출자를 자기자본의 200% 이내로 제한
- (3안)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는 100% 이내로 제한을 유지하되,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200% 이내로 차등 적용

<장단점 비교>

	장점	단점
1안	이중 레버리지 봉쇄	지주회사 실익 감소
2안	이중 레버리지 효과 발생	확대경영의 가능성
3안	*은행지회사의 자본확충 용이 *비은행지주회사 확대경영방지	형평성 문제

다. 遮斷壁(firewall) 設置

-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의 동일차주 및 동일한 개인·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설정
-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, 자회사 상호간의 위험전이를 막기 위한 장치 필요
  - 자회사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및 출자금지
  -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출자 금지

-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시 한도 제한(적격 담보 확보 의무화)
-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상호간 불량자산 거래금지
- 고객의 이익상충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경우 공동광고·하부구조 공동사용에 대해 제한 가능
- Arm's length rule 적용 문제
  -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상호간 정당한 사유없이 서로를 우대하거나 손실 또는 위험을 이전하는 거래 금지
- 특정 자회사의 부실이 다른 자회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차단벽을 확고하게 설치하되, 고객의 이해상충 및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차단벽은 시너지효과를 봉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

## 6. 外國 金融持株會社

- 국내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외국회사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
- 다만, 성격상 적용이 부적당한 사항은 배제
  - ※ 미국(은행지주회사법 § 2(h)(1)), 일본(은행법 § 50의20)에서도 외국지주회사에 자국법 적용원칙을 명시

## 7. 金融持株會社에 대한 세제 문제

-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데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임
- 현물출자나 주식교환으로 자회사 편입시 양도소득 과세 이연, 금융지주회사의 등록세 면제, 이중과세 조정문제, 연결납세제도 도입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
  - 다만, 연결납세제도는 선진국에서 상당수 도입하여 자회사의 중요한 혜택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으나 세수 감소 및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과 대기업집단에 대한 특혜소지 및 결손누적 부실계열사의 퇴출지연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